

의정부지방법원 2016. 5. 18 선고 2014가합7206 판결 [대위변제 구상금 청구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可 고 B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16. 3. 30.

판결 선고 2016. 5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가. 원고는 2009. 8. 24. 피고와 먹는샘물 제조업을 동업하기로 하되, 원고는 기존에 주식회사 C(이하 'C'이라고 한다)이 받은 먹는샘물 개발 및 제조허가의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고, 피고는 피고가 소유하는 경기 연천군 D 지상 공장건물에 먹는샘물 생산 및 제조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(이하 '이 사건 합의약정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는 먹는샘물 개발허가 명의변경을 위하여 경기도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는 위 공장건물에 마쳐져 있던 E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야 변경허가 를 내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.

다. E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F,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은, 'F이 그 소유의 주식회사 H(이하 'H'라고 한다)의 주식 10%를 E에게 양도함으로써 E의 피고에 대한 채권 3억5,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, E은 위 공장건물에 마쳐져 있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F에게 양도한다'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. 위 합의에 따라 F은 E에게 H의 주식 10%를 양도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합의약정은 해제되었다.

라. 그러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피고 채무의 대위변제를 위하여 E에게 양도된 F 소유 주식의 시가 상당인 3억 5,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원고는, 피고의 E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F이 E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에 상당하는 3억 5,000만 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있다. 그러나,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라서, F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, 출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원고가 위 주식의 가액 상당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고,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을 가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
재판장 판사 이승엽, 판사 박은희, 판사 이영은